

# 인권 친화적인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 인권 친화적인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 이상철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자리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인권 친화적인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늘 이 토론회 개최에 함께 힘써주신 촛불 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휴대전화,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도 예외가 아닌바,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7.7%로 나타날 정도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높은 휴대전화 보급률은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가 하나의 학습 도구로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휴대전화 중독, 시력 저하나 비만 등 건강상 문제 야기, 교실 내 교사의 학생지도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같은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휴대전화가 가진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규칙에 근거하여 등교 과정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일과중의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도 하며,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학교규칙 등이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통신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고, 휴대전화 수거 행위 등을 중단할 것과 관련 학교규칙을 개정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학교가 2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휴대전화 소지 사용과 관련된 학생 기본권 침해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 권고를 받은 상당수 학교는 설문조사, 내부 토론 등을 통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구성원 다수가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반대하여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관련된 인권침해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관한 인권 친화적 방안의 모색과 해당 방안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관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문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문화 정착 방안 마련에 관한 여러분의 지혜와 고견이 모아지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인권위는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학교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관련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 이 상 철



# 프로그램 안내

□ 일시 : 2022. 8. 31.(수) 14:00~16: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 생중계)

□ 주최·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프로그램

사회 : 박지연(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구분	세부 내용
~14:00	<등록>
14:00 ~ 14:10	<인사말>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이상철 위원장
14:10 ~ 15:00	<발제> ○ 강영구(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 본 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의 문제점 ○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 학생인권의 차원에서 휴대전화 규제의 의미와 원칙
15:00~15:10	<휴식>
15:10 ~ 16:20	<토론> ○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 본부장) ○ 이성균(고등학교 교사) ○ 민서연(고등학생) ○ 이윤경(학부모) ○ 최주현(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 이필우(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센터장)
16:20 ~ 16:3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6:30	마무리



# 목 차 Contents

## <발제>

발제 1.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 본 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의 문제점 ..... 07 강영구(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07
발제 2. 학생인권의 차원에서 휴대전화 규제의 의미와 원칙 ..... 23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3

## <토론>

토론 1.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 본부장) ..... 31	31
토론 2. 이성균(고등학교 교사) ..... 45	45
토론 3. 민서연(고등학생) ..... 55	55
토론 4. 이윤경(학부모) ..... 61	61
토론 5. 최주현(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 67	67
토론 6. 이필우(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센터장) ..... 69	69





## 발제 1

#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 본 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의 문제점

강영구(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 본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금지의 문제점

강영구(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목 차

- I. 휴대전화 규제 관련 현황
  - 1. 학교의 휴대전화 규제 현황
  -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불수용 현황
- II.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의 문제점
  - 1. 헌법에 비추어 본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금지의 문제점
  - 2. 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본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금지의 문제점
- III. 나가며

## I. 휴대전화 규제 관련 현황

### 1. 학교의 휴대전화 규제 현황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 인권보장 실태조사<sup>1)</sup>에 따르면, “학교가 수업 외 시간(또는 기숙사생활 동안) 핸드폰 사용을 제한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중학생의 83.3%, 고등학생의 76.5%가 “그렇다”고 답하였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201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6

		20. 학교가 다음의 사항들을 제한합니까?		Total
		그렇지 않다	그렇다	
⑤화장/미용제품/ 미용기기 반입 제한 $\chi^2=141.58***$	중학생	643 (24.6%)	1973 (75.4%)	2616 (100.0%)
	고등학생	1360 (39.0%)	2124 (61.0%)	3484 (100.0%)
	Total	2003 (32.8%)	4097 (67.2%)	6100 (100.0%)
⑥수업외 시간/ 기숙사생활 동안 핸드폰사용제한 $\chi^2=42.12***$	중학생	438 (16.7%)	2178 (83.3%)	2616 (100.0%)
	고등학생	820 (23.5%)	2664 (76.5%)	3484 (100.0%)
	Total	1258 (20.6%)	4842 (79.4%)	6100 (100.0%)

한편, 같은 질문에 대하여, 비조례지역은 84%, 조례지역은 74.4%가 “그렇다”고 답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학교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교와 비교할 때 더 많이 수업시간 외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0년 서울시교육청과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sup>2)</sup>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또는 이용을 어떻게 정하는지 질의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의 86.4%는 ‘학생이 스스로 보관’, 11.4%는 ‘등교 시 수거’, 1.1%는 ‘학교 내 소지 금지’에 응답하였습니다.

<표 4-90> 휴대전화 관리방법 (초등학교)

구분		학생이 스스로 보관	등교시 수거	학교 내 소지 금지	기타
고학년 학생	N	470	62	6	6
	%	86.4	11.4	1.1	1.2

중학생의 경우, 75.9%는 ‘학교 내 일괄수거(등교 시 수거)’, 10.4%는 ‘학교 내 소지 금지’, 10.3%는 ‘학생 자율 관리’, 2.3%는 ‘수업시간에만 수거’한다고 답하였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아동인권센터,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2020. 2.

<표 4-91> 휴대전화 관리방법 **(중학교)**

구분		학생 자율관리	수업시간에만 수거	학교 내 일괄수거	학교 내 소지 금지	기타
		중학생	N	72	16	531
	%	10.3	2.3	75.9	10.4	1.0

고등학생의 경우, 48%는 ‘학생 자율 관리’, 47.2%는 ‘학교 내 일괄수거(등교 시 수거)’, 2%는 ‘학교 내 소지 금지’, 1.6%는 ‘수업시간에만 수거’에 응답하였습니다.

<표 4-92> 휴대전화 관리방법 **(고등학교)**

구분		학생 자율관리	수업시간에만 수거	학교 내 일괄수거	학교 내 소지 금지	기타
		고등학생	N	270	9	266
	%	48.0	1.6	47.2	2.0	1.3

##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불수용 현황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수업시간과 그 외 쉬는시간, 점심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학교에게 휴대전화 수거행위를 중단할 것과 관련 학교규칙을 개정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학교 중 20% 이상의 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구성원 다수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반대하고, 교사의 학생지도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표] 휴대전화 진정사건 권고 및 수용보고 현황 (단위 : 건, %)

연도	구분	권고 건수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중
2017		3	1	1	1	-
2018		16	9	3	4	-
2019		12	6	4	2	-
2020		18	10	1	4	3
2021		40	7	2	7	24
합계		89	33	11	18	27
		(100.0%)	(37.1%)	(12.4%)	(20.2%)	(30.3%)

이하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으로 학교가 수업시간 외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II.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금지의 문제점

### 1. 헌법에 비추어 본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금지의 문제점

#### 가. 헌법

##### 1)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합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데,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헌재 1993. 5. 13. 92헌마80 등 참조).

학생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격체이므로, 학생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서 자유로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2)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합니다(헌재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참조).

학생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집니다. 특히, 오늘날 휴대전화는 통신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가장 내밀한 정보를 담은 매체이기도 하므로, 학생은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와 나아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 3)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또한,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비밀’이란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하며, ‘통신의 자유’란 국민이 자유롭게 통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 4) 자유와 권리의 제한

물론,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한계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입니다.

즉,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아무 때나 권력자가 마음 내키는 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도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란 필요한 경우 이상으로 과하게 기본권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과잉금지원칙’<sup>3)</sup>이라고 합니다.

‘과잉금지원칙’은 구체적으로는 ① 기본권 제한 조치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목적의 정당성), ②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본권 제한 조치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어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③ 기본권 제한 조치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화), ④ 기본권 제한 조치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원칙을 말합니다. 기본권 제한 조치가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그 조치는 ‘위헌’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가 합헌적으로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해당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자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나. 헌법에 비추어 본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금지의 문제점

### 1) 과잉금지원칙 위반

#### ① 목적의 정당성

먼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 3) 헌재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국가작용 중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화),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법익의 균형성)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목적은 학생이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방법의 적절성

다음으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적절한 방법인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컨대,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조회 때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종례 때 되돌려주는 경우 학생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일견 이러한 조치가 교육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뺏어도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어차피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고,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수업시간에 집중<sup>4)</sup>”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수거 조치가 과연 교육활동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휴대전화’ 때문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관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강의식, 주입식 수업’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③ 피해의 최소성

설사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치가 필요최소한의 조치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목적은 학생이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수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수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수업시간에 한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규칙을 만들면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휴대전화에 신경이 쓰여 수업에 집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있다면, 이처럼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의 기본권을 보다 덜 침해하면서도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수업시간, 쉬는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기본권 제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4) “휴대폰 수거하자, 학생들 숨겨둔 ‘더블폰’꺼내 게임” 기사, 중앙일보, 2016. 7. 23.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제한 입법이나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이 ‘피해최소성 원칙 위배’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권행사의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행사의 ‘여부’를 제한할 경우에는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sup>5)</sup> 또한, ‘부분적 금지’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면적 금지(예외가 없거나 의미 없는 예외인 경우)’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sup>6)</sup>

5) 헌재 1998. 5. 28. 선고 96헌가5 기본권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②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과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중략)

③ 기부금품의 모집에 따른 폐해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그러한 폐해가 가장 우려되는 모집형태인 방문모집이나 가두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모집방법을 우편에 의한 모집으로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방문모집과 가두모집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든지 또는 모집장소를 일정한 공개장소로 제한하는 등 모집절차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얼마든지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중략)

따라서 법이 의도하는 목적인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생활안정은 모집목적의 제한보다도 기본권을 적게 침해하는 모집행위의 절차 및 그 방법과 사용목적에 따른 통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모집목적의 제한을 통하여 모집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제3조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수단의 범위를 훨씬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6) 헌재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제지행위 위헌확인

“가사 당시 서울광장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하고 중대하여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처럼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으로서는 서울광장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불법·폭력 집회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반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 활동 등의 이용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였어야 할 것이다.

우선 장소적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와 같이 서울광장 주변을 경찰버스로 완전히 둘러싸 차벽을 만드는 대신에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고 경찰이 그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대규모의 집회를 막으면서도 시민들의 개별적인 통행이나 여가활동은 가능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시간적·상황적 측면에서도, 서울광장 주변에 모인 추모객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의 불법·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라든지 서울광장 인근 건물에의 출근이나 왕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2009. 6. 3.은 평일이었다) 일부 통제를 풀어 보행자들의 통행을 허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하고 이러한 수단을 채택하더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고려 없이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로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요구를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④ 법익의 균형성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활동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학생들의 공격성을 키우고, 그로 인한 갈등이 오히려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사용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찾을 수 있습니다.<sup>7)</sup>

반면, 오늘날 휴대전화는 성인에게 그러하듯이 학생들에게도 ‘필수품’입니다.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통하여 친구와 문자를 주고 받고 SNS에서 소통을 하며 세상과 연결된 존재가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학습 도구로 활용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통하여 사진을 찍고, 세상을 기록하는 등 이를 놀이 도구이자 기록장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제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그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은 매우 심각하므로,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2) 소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7) 이숙정, 전소현,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모 중재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24권 6호, 2010

## 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학교규칙 등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2. 1. 25. 결정 21진정0956200 고등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제한]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21조를 근거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비록 피진정학교가 필요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이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의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통신의 자유 제한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아울러 2학년 학생들의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에서 도출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 2. 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본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제의 문제점

### 가. 아동권리협약

#### 1) 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20세기에 이르러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와 구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주체로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989년 유엔은 아동을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권리주체로서 천명하고 아동의 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 협약에 가입하였고, 헌법 제6조 제1항<sup>8)</sup>에 따라 동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집니다<sup>9)</sup>.

특히, 아동권리협약은 전문에서 아동 역시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존엄성’이란 ‘모든 아동이 권리의 소유자로서, 그리고 개인적 인격·특별한 필요·이익·사생활을 가진 독특하고 귀중한 인간으로서 인정·존중·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sup>10)</sup>

이에 아동권리협약은 제16조 제1항에서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2) 학교 규율이 아동의 존엄성과 합치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제28조 제1항에서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밝히면서, 제2항에서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교 규율이 아동의 존엄성과 합치’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8)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9) 이 협약에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처음 협약을 비준한 때부터 2년 경과 후, 그리고 이후 매 5년마다 협약의 이행 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동 협약 제44조).

1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3호 (2011)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나. 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본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금지의 문제점

그런데, 학교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거나 일과시간 중 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므로, 아동권리협약 제16조의 아동의 사생활,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 역시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학교가 학업성적, 징계조치와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에 주목한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 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라고 하여,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거나 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고, 우리 정부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 6차 최종견해]

### 사생활에 대한 권리

25. 위원회는 학교가 학업성적, 징계조치와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에 주목한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 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일부 교사의 일탈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학교의 학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권리협약 제28조의 ‘학교 규율을 아동의 존엄성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할 당사국의 핵심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III.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학칙을 개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동의 사생활과 통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학교 규율이 아동의 존엄성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할 아동권리협약상 당사국의 핵심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학칙을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게 개정하여야 합니다. 물론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허용하게 될 경우 교육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어쩌면 과도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교내 휴대전화 소지가 가능함에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조화롭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이 정말 휴대전화 때문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지 못하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때문인지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불수용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단순히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는 이유로 학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sup>11)</sup>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제25조 제2항),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하며(제3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4항).

####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2. 1. 4.> [전문 개정 2011. 5. 19.]



이에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법률상 효력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9. 20.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 대법원 확정<sup>12)</sup>).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권고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는 것일 뿐, 권고 내용과 같은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기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률<sup>13)</sup>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학생인권조례에 반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학칙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학칙을 규율하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인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2) 서울행정법원 2007. 9. 20.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 대법원 확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제25조 제2항),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하며(제3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이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피고가 2006. 9. 14.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3) 참고로 현재 국회에는 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등 14인)

제17조의2(학생인권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하여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2.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3.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 압수하는 행위.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가정환경, 성적(成績),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상·신념, 성적(性的)지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다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5.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을 정규학습시간 외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법령이나 고시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서약을 강요하거나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7. 성적 괴롭힘을 가하거나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8.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 발제 2

# 학생인권의 차원에서 휴대전화 규제의 의미와 원칙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 학생인권의 차원에서 휴대전화 규제의 의미와 원칙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전 모든 결정을 훑어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기로 국가인권위가 최초로 학생 휴대전화 규제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것은 2007년 초, 경기 수원 ○○고등학교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은 단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2006년 ○○고는 두발 규제, 휴대전화 규제 등에 관해 학칙을 개정,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휴대전화의 경우는 개정 전에는 수업 중에는 전원을 꺼두고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이 가능하게 했으나, 개정 후에는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적발될 시 1개월간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2006년 8월, ○○고 학생들은 이렇게 개악된 학칙에 항의하는 학내시위를 벌인다. 운동장 1차 시위 이후 며칠 뒤에 2차 시위가 준비됐는데, ○○고 교사들은 2차 시위를 막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하여 전단지나 종이 피켓, 양초, 폭죽 등을 압수했고, 학생들에게 시위를 하면 퇴학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이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는 전교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외부단체나 기자와 연락한 학생이 누군지 찾아내려 들기도 했다(학교 측은 휴대전화 압수는 개정된 학칙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상황을 파악하려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와 사생활의 자유 침해로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는데, 국가인권위에서는 엉뚱하게도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고 휴대전화 규제가 인권 침해라는 (이전에 결정례가 없기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 결론

가. 피진정인이 학생 두발규제 등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근거가 없는 휴대폰 수거 및 열람하고 소지를 금지케한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국제인권협약 『아동의 권리』 제12조를 위배하여 헌법 제16조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 06진인2030 결정문 중

##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처리한 학교들

모든 인권 문제가 그렇겠으나, 학교 내 휴대전화 규제 문제는 논란이 시작된 때부터 단지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고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집회나 집단행동을 방해하고 감시하고자 휴대전화가 표적이 되기도 했고, 촛불집회 참가 홍보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기도 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체벌 등의 폭력과 부조리를 휴대전화에 부가된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이슈화가 되는 일도 늘어났다. 소위 ‘휴대전화 중독’, 현재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업을 방해하고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07년 개봉한 한국 영화 <좋은 아나지>에는, 교사인 주인공이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를 쓰고 있자 이를 압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항의하는 학생의 따귀를 때리려는 순간, 그 교실의 학생들이 모두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어올린다(참고로 이후에는 휴대폰 카메라에 찍힌 사진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누명을 쓰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씬은 그 전조인 셈이다). 이 장면은 당대의 많은 관객에게 ‘교권이 실추되어 초라한 교사’의 처지를 연출한 것으로 읽혔는데, 수업과 교사와 폭력, 학생인권과 휴대전화 사이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휴대전화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담고 있고 관련해서 여러 담론도 나왔음에도, 학교와 학생에 관련해서는 ‘기존 학교의 질서를 위협하고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며 중독과 유해정보를 전하는 것’이라는 일방적인 이미지가 훨씬 강했다.

내가 초·중·고를 다니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휴대전화를 전면 규제하는 학교는 많지 않았다. 수업 시간 중에 사용해서 안 된다(혹은 쓰다 걸리면 혼난다)는 상식선의 합의 내지는 규칙이 있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며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하거나, 등교 시 보관함에 제출하게 제도화하거나, 장기간의 압수 규정을 만드는(물론 압수 규칙이 없을 때에도 교사들은 자의적으로 휴대전화를 종종 압수해왔지만) 사례가 늘어갔다. 경남이나 울산에서는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역 의회에 발의된 경우도 있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인권 의식 및 고충 실태 조사>에서는 ‘휴식시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인권 침해라고 느낀다는 응답이 61.1%에 달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2007년 6월 6일, 청소년인권단체들이 교사단체, 학부모단체 등을 초대하여 ‘학교, 휴대폰 압수·금지 괜찮아?’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던 기억이 난다. 이 토론회에서는 휴대전화 규제의 인권 침해 쟁점을 비롯해, 학생들은 왜 휴대전화를 쓰고 싶어 하는지, 학교는 왜 이를 강압적으로라도 규제하려 드는지 등을 토론했다. 그렇지만 이때의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학생 휴대전화 규제에 관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교육계에서의 심층적인 토론 등이 이루어진 자리를 본 기억이 없다. 적어도 그 2~3년 새에 사회적으로나 교육계에서 폭넓게 토론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경기도와 서울, 광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운동이 벌어지고 그 안에 휴대전화 관련 기준이 포함된 2010년 이후에야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해졌다.

정작 2000년대 중·후반 한창 이런 규제가 생겨날 때는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이 학교 질서에 방해가 되며, 또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얼마든지 제한·침해해도 되는 여건이라는 이유로 우후죽순 규제가 생겨났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 과정 자체가 학생의 인권이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 얼마나 경시되는지를 보여 주는 것 아닐까.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휴대전화 규제가 인권 문제임을 지적한 이후 15년이 흘러서도 같은 권고를 반복하고 있고, 아직도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기준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그 후과라 하겠다.

## 학생의 삶의 문제로 바라볼 때

최근에 나는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음성 통화 기능이 안 된 일이 있다. 돈도 시간도 없어 열흘 정도를 그대로 지냈는데, 다른 기능은 모두 잘 작동했는데도 전화 통화가 안 된단 사실이 업무 수행이나 친목 관계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 휴대전화가 완전히 먹통이 되었다면 아마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루이틀 내에 수리를 했어야 했을 것이다. 현대 한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휴대전화 없는 삶, 직업, 여가를 살기 어렵다.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휴대전화는 세상과의 소통의 창구이며, 지인들과 연락하는 매개이며, 가장 간편한 여가와 놀이의 도구이기도 하다. 신문 대신 휴대전화를 통해 사회와 문화에 관한 정보를 찾아 보고 알게 되며, SNS에 자기를 표현하고 타인의 소식을 접하며, 웹소설이나 웹툰을 읽고, 음악을 듣고, 문자 메시지 및 메신저 서비스로 대화를 나누며, 게임을 한다.

온라인을 통해 원격으로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한계도 뚜렷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보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 인터넷 청원을 통해, SNS 전파를 통해, 게시물을 통해 우리는 더 잘 목소리를 내고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를 부당하게 가로막는 것이다. 같이 청소년인권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 중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가 완전히 금지된

경우에는 활동에 제약이 상당하다. 단체에서 급하게 논의해야 할 일이 있거나, 언론에서 사례 조사나 인터뷰를 요청할 때 등에도 그런 청소년들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연락이 되곤 한다. 언제나 실시간 온라인일 수야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만나질 정도 단위로는 연락이 닿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런 여건은 학생들을 한층 더 사회적 발언력이 약한 약자로 만들 수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하루 일과 중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최장시간에 이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연합뉴스는 2016년, “고교생 잠 도둑은 스마트폰”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기사 첫머리에 소개된 고3 학생의 일과는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자정(12시)에 귀가해서, 스마트폰을 붙잡고 2시간 정도 채팅과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다 새벽 2시 가까이 돼 잠을 자며,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서 등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학생의 수면이 부족한 이유는 공부하다가 밤 12시에 귀가하고 6시 30분에 기상해 등교해야 하는 학습 일과인가, 아니면 0시에서 2시까지 스마트폰을 하는 것인가? 이처럼 학교 안(혹은 학교와 학원 정도)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매우 긴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원격으로도 세상의 정보를 접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창구가 된다. 이러한 삶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규제하느냐 마느냐, 유해하냐 아니냐의 문제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학생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기에 더욱 교육적으로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 규제 문제가 갈등의 중심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두발 규제 등에 비해서 훨씬 더 수업 진행, 학업에 관련된 문제라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반대로 물으면,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는 것은 휴대전화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수업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냐고도 할 수 있다. 휴대전화 규제의 배경에는 결국 현재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을 수업에 강제적으로 앉혀놓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있다. 휴대전화가 없을 적에도 많은 학생이 수업 중에 잠을 자고,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한다. 그런데 유독 휴대전화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려고 드는 것은 이것이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에 잘 참여시킬까 하는 고민보다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권위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한다.

물론 사람의 집중력이나 참여 의지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며, 참여하고 싶는데도 산만해질 수도 있고 자꾸 한눈이 팔릴 수도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꼭 필요한 수준에서 규칙을 만들고 이용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학교와 교육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휴대전화를 전면 금지하고 수거하는 방식이 많은 학교에서 점점 뿌리내린 것은, 이것이 손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이고, 휴대전화 이용에 관한 문제를 교육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교육(수업)에 방해가 되는 문제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상당수 학교들에서 휴대전화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도 이용에 관해 에티켓 차원의 문화와 규칙을 만들고 있음을 생각하면, 과연 어떤 방식이 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인권적으로 정당한지를 평가해볼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인권의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특정한 소수자들을 소수자라는 이유로 더 쉽게 인권을 제한당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항상 성찰해봐야 한다. 많은 직장에서, 교육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가 때론 치명적인 방해물을 낳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등에서도 휴대전화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미 현대 한국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그 사람의 사생활이자 통신-사회관계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지난해 쿠팡 창고 화재 사고 이후, 쿠팡에서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출근 시 수거해온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매일노동뉴스, “휴대전화 소지 금지는 인권침해다”, 2021년 7월 1일) 그런데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경우에만, 학교에서만 더 쉽게 더 강력하게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발 규제도 그렇지만, 상당수 학생인권 문제가 사회 일반의 기준은 어떤지를 비교해보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학교의 특수성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 토론 1

#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제한 필요성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 본부장)





##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제한 필요성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 본부장)

### 1. 토론을 시작하며

-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학교도 ‘휴대전화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와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올해 4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수업장면 동영상을 찍어 학생들 대화방에서 ‘대머리’라고 명예를 훼손한 사건<sup>1)</sup>을 비롯해 수업 중 울리는 전화벨과 SNS 소리, 심지어 통화나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 보는 사례, 몰래 녹음·이나 몰래 녹화로 인한 학교폭력, 성범죄 악용 사례와 제출·반납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대표적인 예다.
-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번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쳐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을 생각할 때 그 결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에만 치우치고 의무와 책임의 상대적 약화로 인한 문제 발생과 교육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다는 비판이 있다.
- 토론을 준비하면서 아쉬운 점은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국가적 통계’가 2013년도 머물고 있어 현재 전국 초·중·고 학교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확한 데이터와 현황 파악 없이 올바른 정책 수립은 어려운 만큼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먼저 학교 현실과 현황 파악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1) 김지원, “‘대머리’ 뒷담화한 학생들 고소… 요즘 교사, 교권침해 안참아”, 『조선일보』, 2022.8.15

\* 학생 휴대전화 소지 관련 학교 규칙 현황(2013. 10, 교육부 전수조사)

- 소지 허용(초 35.7%, 중 4.4%, 고 25.6%), 불허(초 5.6%, 중 10.0%, 고 9.2%), 수거 후 반환(초 58.7%, 중 85.6%, 고 65.2%)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13.12.5.) '학교 관리 중 휴대전화 분실시 보상, 교원 교육활동 지원'

□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제한 필요성에 관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한다.

## 2.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관련 현장의 어려움 및 교원 여론

### 가. 한국교총 접수된 현장 교사들이 전하는 사례

- ① 초등인데, 학부모들이 수업 중에도 자녀에게 용건을 남기기 위해 전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벨 소리로 지정해놓아 각종 알림이 수업 중에 계속 들리는 경우도 많음(이건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임)
- ② 초등학교실에서 울려서 수업 방해가 되거나 분위기 저해하는 경우 많아. 특히 저학년은 꺼냈다고 생각하는데 켜져 있어 다른 애들이 보고 이야기해서 소란스러워지고 학부모들이 위치 알림 이런 거 언젠든 무분별하게 하니깐 알람 울리기도 하고 엉망. 빈도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저학년은 정말 잣고, 자잘한 것도 다 신경 쓰임.
- ③ 고교 교사인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수업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해 교사의 수업 흐름을 끊는 동시에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 방해. 또한 교사나 친구들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SNS상에 공유함으로써 교권이 추락할 가능성도 큼.
- ④ 수업 중 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생기는 듯함
- ⑤ 고교 교사인데 가장 많은 수업 방해 사례는 녹음임. 수업 분위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작은 농담도 학생이 기분이 나쁘다고 민원을 넣는 경우도 발생함. 문제가 되는 발언이 아니었더라도 교사는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할 의무가 있기에 관리자와 이야기하게 되고 이는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옴. 또한 수업 시간에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 메시지하고 하교 후 만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 예도 간혹 생기기도 함. 이때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 책임소재가 생기기도 함.
- ⑥ 초등 남학생이 휴대전화에 야동을 저장하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다닌다는 것을 전하여 들은 담임교사가 학생을 개별 상담을 하고 학부모와 상담한 결과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교사를 책망하는 일이 발생함.

- ⑦ 휴대전화 문자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싫은 친구에게 몹쓸 욕설을 보내면서 전송 전화번호는 엉뚱한 번호를 남기는 방법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었음.
- ⑧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다가 계속 수업 시간에도 이어서 하고자 하므로 수업에 방해가 되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짐  
 전화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내용도 부모님께 연락하여 산만한 분위기 조성  
 문자 메시지를 남용하여 수업 중에도 방해 요소로 작용함. 불필요한 온라인 연결을 하여 과도한 전화요금 징수. 불법 다운로드 및 유해 사이트의 접속. 친구의 사진 찍기 및 동영상 촬영으로 인하여 친구끼리 다툼
- ⑨ 요즘은 수업 중 많은 학생이 책상 밑에 양손을 내리고 문자를 주고받아 수업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임.
- ⑩ 복도 모르는 곳에서 오락하다가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
- ⑪ 수업 시간 비밀리에 문자 송수신. 진동모드로 지시를 해도 잘 지켜지지 않거나 잊음으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벨 소리. 선생님들의 작은 실수도 촬영하여 전송함으로 학교의 명예 실추는 물론 좋지 않은 여론
- ⑫ 아침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도중 학생이 엎드려 있다가, 교사가 반복해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욕을 함.
- ⑬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여 지도하며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으나 3~4차례의 협박조로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 화장실에서 흡연하여 제지하는 가운데 학생이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다시 회수한 후 교사의 목덜미 옷을 잡고 놓지 않았음.
- ⑭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교사가 교칙에 따라 휴대전화를 압수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주먹으로 게시판을 여러 번 치는 등 수업 진행을 방해함.
- ⑮ 교사의 학생 지도 모습을 몰래 촬영해 SNS에 공개로 올림
- ⑯ 아침 등굣길 중학교 뒷문 쪽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A 학생에 대해 교사가 이를 지도하는 장면을 B 학생이 뒤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A 학생의 SNS에 게시함. 지도하던 장소에 있던 학생을 통해 삭제하라고 전하였으나 B 학생이 삭제하지 않음. 게시된 SNS에 교사를 조롱하고 욕하는 댓글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교사가 심리적 불안 및 충격을 받음.
- ⑰ 학생이 교실 책상을 훼손하여 교사가 지도하였는데, 카카오톡으로 “ㅋㅋㅋ, 쓰디냐, 집이고 학교고 x같아서 못가겠네, 애미한테 찔러라, 교권보호위원회 여세요” 등의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

- ⑩ 수업 중 교사의 사진을 몰래 찍어 모욕의 문구와 함께 SNS상에 올림
- ⑪ 3달간 교실과 복도에서 교사의 뒷모습과 하반신을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학생들끼리 SNS 메신저 채팅방에서 공유함.
- ⑫ 학생이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의 사진을 찍고, 찍지 말라고 했으나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 지울 것을 요구했으나 불손한 언행을 하면 사진을 지우지 않음. 수업 중 교사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사진 위에 교사 이름과 욕설을 적어 페이스북에 올림

**<휴대전화를 통한 성폭력·성희롱 사례-학교교권보호위 상정>**

- ① 출근하여 계단을 오르는 피해 교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적발됨.
- ②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 ③ 학생(3명)이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뒷모습, 다리를 촬영함
- ④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여자 화장실에서 교사의 모습을 촬영함.
- ⑤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 치마 속을 카메라로 불법 촬영함
- ⑥ 중학교 수업 종료 전 조별 정리 활동 중 3명의 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함. 휴대전화 확인 결과 여러 차례 촬영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됨.
- ⑦ 여교사 화장실에서 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관찰하다가 해당 교사에게 적발됨
- ⑧ 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전화로 여교사 촬영
- ⑨ 수업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학생이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함

**나. 한국교총 실시 교원 설문조사 결과<sup>2)</sup>**

1) 한국교총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세 차례 교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2009년 68.0%(2,652명 중),

---

2)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보도자료란 참조

\*2010년 65.56%(450명 중)

\*2013년에는 중학교 교원 63%(880명 중), 고등학교 교원 68%(1,100명 중)

2)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전국 초·중·고 교원 1,645명, 2017. 12. 29~2018.

1. 8. 모바일, 신뢰도 : 95% 신뢰수준에서  $\pm 2.42\%P$ )

-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포함해 자유롭게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대해, 응답 교원의 96.9%가 반대(매우 반대 82.4%, 반대 14.5%). 찬성 2.5%
-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44.3%)’, ‘학습 및 교육활동 전반의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41.6%)’, ‘타 학생의 온전한 수업권을 방해(11.1%)’

### 다.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과 ‘전교조 경북지부’ 공동 교원 설문조사 결과<sup>3)</sup>

(2022.4.28.-5.11, 경북지역 유·초·중·고 교사 2,020명 대상)

-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휴대전화를 조회 시간에 일괄적으로 걷고 종례 시간에 배부하는 경우’에 대해 83.9%가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응답

## 3.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논란 발생 때마다 생기는 학교(선생님)의 억울함과 항변

### 가. 학교와 선생님은 학생의 인권 침해 가해자? 학교는 인권 친화적이지 않은가?

-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 인권 침해’라는 결정 때마다 논란이 발생하고, 마치 현재 학교가 인권 친화적이지 않은 듯한 인상이 발생한다.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초4~고3 학생 총 8,623명 대상으로 연구한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2021. 12. 31 발행)」 결과

3) 교사 84%, “학생 휴대전화 강제 수거는 인권 침해 아니다” 국민일보 2022년 5월 16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26299?sid=102>



-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다.’라는 응답률은 2017년 89.3%에서 2021년 95.2%로 꾸준히 상승
-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96.3%
- 학교 규칙 제·개정예 대한 학생의 참여 및 존중 정도는 2017년 73.2%에서 2021년 82.2%로 꾸준히 증가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 학교는 인권 친화적 학교로 이미 상당히 변화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 나. 학교와 선생님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 학교와 선생님은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하고, 교권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에게 부여된 권리다. 교사는 학생의 인권보장의 소중한 가치와 더불어 헌법적 권리인 학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학교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배움터로 자신의 권리와 더불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무와 책임의 중요함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
- 대다수 교사는 ‘휴대전화 사용의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사용하고 절제하는 것인데, 실제 잘되지 않는다.’라고 입을 모은다.
- 이처럼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다르다. 소수라 해도 수업 중 휴대전화 이용을 해 수업을 방해하거나, 쉬는 시간이라도 통화를 크게 하거나 음악을 틀기도 한다. 교사는 당장 수업 방해로 교육활동 침해를 받게 된다. 또 참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문제 제기나 민원이 발생한다. “다른 학생으로 인한 수업권과 휴식권이 침해되었는데 왜 제지하지 않는가?”
- ‘휴대전화를 통한 학교폭력’도 문제다. 올해 7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2년여간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 100여 장이 발견돼 수사에 나선 사건이 있다. 2022년 5월 19일 발표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1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기준 최근 1년간 사이버 폭력 가해 비율은 69.9%, 피해 경험은 23.4%로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은 대표적으로 ‘언어폭력’, ‘명예 훼손’, ‘갈취’, ‘영상 유포’ 등으로 이 중 언어폭력이 12.0%로 가장 높았다.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로 문자·인스턴트 메시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등)가 5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SNS가 34.5%로 높았다. 사이버 언어폭력이 12.0%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 이처럼 사이버 폭력이 급증·확산하는 이유는 휴대전화 하나로 상대를 괴롭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이렇다 보니 학교와 교사가 학칙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수거·보관과정에서의 업무부담, 분실이나 파손으로 피해보상도 교사의 부담이다. 교총이 2013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휴대전화 파손·보상 제도를 요구해 2014년 1월부터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고 있다.
- 수거과정에서 어떤 학생은 안쓰는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수업중이나 쉬는 시간에 사용하여 갈등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교사가 힘든 휴대전화 수거·보관을 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학칙 이행과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교사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 4.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통계

### 가.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수면 부족 이유, 스마트폰 과몰입 비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2021. 12. 31 발행)」)

- 학생들의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3~9세가 7.1시간, 10대는 13.6시간, 20대는 16.2시간인데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은 35.8%에 달하고 있다.
- 또한 수면 부족의 이유로 학업(야간자율학습, 학원 과외, 가정학습)으로 인한 경우가 총 47.4%지만, 게임 10.9%, 채팅·문자 9.3%, 인터넷사이트 13.7%, 드라마 영화시청도 10.1% 등 44%에 달해 학업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수면 부족도 큰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연구보고서에서는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인해 학업이나 일상생활, 대인관계 등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 10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영상 매체를 접하거나 취미 활동, 음악 감상, 게임 등의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학업 및 상거래 정보 탐색, 메신저 등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함으로써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5.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관련 쟁점 사항 관련 의견

### 가. 외국 사례를 통해 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냐의 고민

-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는 인권 침해’라는 결정대로라면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호주, 핀란드 등은 인권 침해 국가들이다.<sup>4)</sup>
- 프랑스는 3~15세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적 목적·과의 활동에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외에는 학생들은 집에 스마트폰을 집에 두거나 학교에서는 전원을 꺼둬야 한다. 고등학교도 부분적·전체적 시행 여부를 학교 스스로 결정한다. 교내 스마트폰 전면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스마트폰 사용이 수업을 방해하고 사이버 폭력, 포르노 등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선 공약 사항이다. 당시 장미셸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날 화면 중독과 나쁜 휴대전화 사용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주된 역할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의 기본 역할이고 이 법이 그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국은 2013년부터 1/3의 학교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완전 금지, 1/5 수업 시간 사용 금지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 역시 2009년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 반입을 금지했다가 2020년부터는 중학생은 휴대전화 반입은 허용하되 수업 중 전화 통화나 인터넷 사용은 금지했다.
- 스웨덴은 2016년 조사 결과 10~15세 학생의 6%만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핀란드 공영방송 YLE의 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 교장의 38%가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교육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는 2019년 7월 6일, 2020년 신학기부터 초·중등 학생의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결정을 발표했다. 학생은 등교 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마지막 수업이 끝날 때까지 스스로 라커에 보관하도록 했다.
- 이처럼 인권 선진국인 이들 나라가 통신의 자유 등 학생 인권침해 여부 논란에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라는 선택을 한 이유는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런던정경대 연구진이 휴대전화 교내 반입을 금지한 영국 내 91개 학교의 시험성적을 조사한 결과, 금지 이전보다 성적이 평균 6.4% 향상됐고,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엔 성적이 14%나 올랐다고 한다. 우리도 이러한 인권 선진국이 왜 이러한 제도와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4)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 『국외교육정보, 국가별 교육동향』, <https://edpolicy.kedi.re.kr/frt/search/searchPage.do>

## 나. 국가적 기준 마련이나? 학칙 반영이나? 의 문제

### <휴대전화 사용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변경 과정>

2012. 4. 20 개정	2020.2.25. 개정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p>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p> <p>1. ~ 6. (생략)</p> <p>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p>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와 협의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교칙 운영 매뉴얼을 더 자세히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학교현장의 우려와 반대 속에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에 국가적 기준 마련 법령근거를 없애 놓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교칙 운영 매뉴얼만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또 학교의 학칙 자율성을 준다며 법령상 기준을 삭제해놓고 매뉴얼을 통해 강제한다면 학교의 자율성 침해와 학교 현실을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 따라서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학생의 권리와 의무 관련이 깊고, 학교 현장의 가장 큰 갈등 사안이자 고민거리인 만큼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국가적 법령 기준을 두되 학칙(학생생활인권규정)에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 간 민주적 논의를 통해 학교 실정에 맞는 휴대전화 소지·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교총에서 이번 토론회를 맞아 현장 교원 의견수렴 결과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국가적 기준 마련 또는 학칙 기준 마련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결과, 초등교원의 경우는 학칙에 기준 마련 의견이 좀 더 많지만, 중·고교 교원은 국가적 기준 마련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중·고교가 초등보다 훨씬 휴대전화를 둘러싼 갈등과 문제가 많은 이유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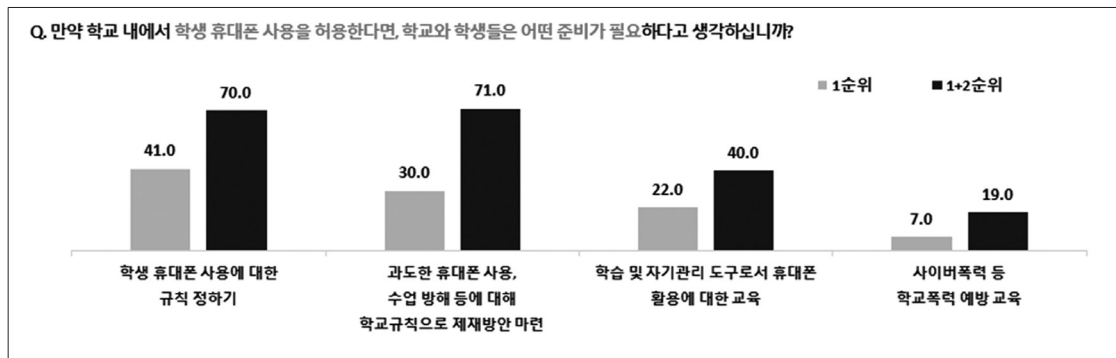
## 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학부모의 마음 : 학교만이라도 휴대전화로부터 떨어져 있었으면 하는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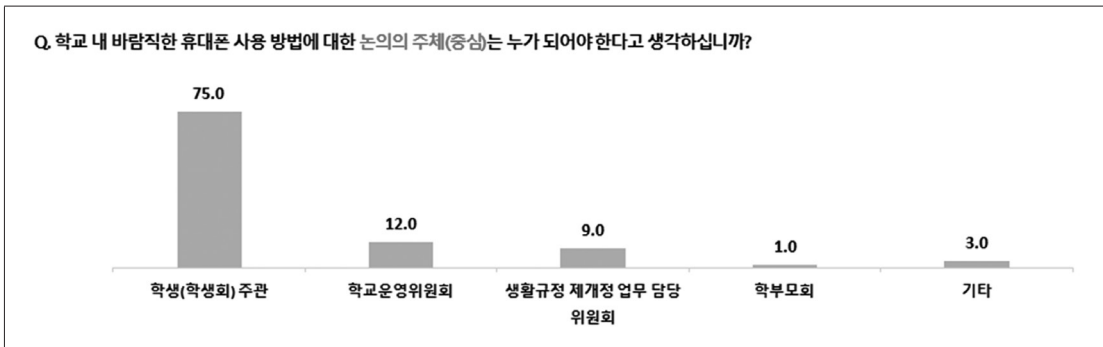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가 타임리서치에 의뢰,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505명, 서울 중·고등학생 609명 대상 여론조사 시행(2018. 12. 12 발표))

-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해 시민은 찬성(77.0%), 반대(23.0%), 학생의 경우, 반대(72.6%), 찬성(27.4%)으로 나타나 시민과 학생 간 다른 의견
-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찬성하는 이유는 시민의 경우, 수업 집중력 저하(53.0%), 스마트폰 중독 등 과몰입(29.6%), 교내 사이버 폭력 우려(9.8%), 무단 촬영 등 물의 가능성(5.4%) 순
- 학생의 경우, 수업 집중력 저하(50.3%), 스마트폰 중독 등 과몰입(24.6%), 무단 촬영 등 물의 가능성(10.8%), 교내 사이버 폭력 우려(6.0%) 순으로 시민과 학생 모두 ‘수업 집중력 저하’로 인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
- 학생의 사용 제한 반대 이유, 학생 스스로 통제 가능(36.4%), 학생 인권 침해(29.0%), 유용한 기능 제공(24.0%), 학교폭력 위급사항 신속 대응(7.0%)의 순
- 이렇듯 시민과 학생의 견해차가 매우 큰 것이 확인된다. 결국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이상과 현실의 차이, 학교에서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갈등과 고민은 해소되기 어렵다.

## 라. ‘바람직한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 방안’ 서울시교육청 공론화 결과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2021.12.20.)- 공론화 시민참여단 200명)





## 5.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관련 종합의견

- 그간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완화 권고 등 교육과 관련한 결정을 할 때 교육계 안팎의 큰 논란과 비판이 있었다.
- 그 이유는 비록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목적과 그 결정 취지를 이해한다고 해도
  - 첫째, 학교 현실과 괴리되는 이상적 결정이라는 점
  - 둘째, 인권에만 치우쳐 상대적으로 의무와 책임은 외면하거나 소홀하다는 점
  - 셋째, 교육적 측면의 고민이 약하고 다루고 다양한 시각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 지금 교육계는 수업 중 문제행동 학생을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거의 없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를 보장하기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을 교충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 학교 내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에 대한 원칙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제안한다.
  - ① 학생 의견을 존중하되,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칙을 정하고 반드시 실천
    - 휴대전화 소지·허용의 기준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하되, 학교별 상황과 여건이 다르므로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구성원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학칙에 정하고 반드시 실천
  - ②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허용의 경우라도 수업 등 교육활동 중 엄격한 사용 제한, 휴대전화를 악용할 경우 제재 조항 마련 후 이행

(예시)

- ①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수업 등 교육활동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 ②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 놓는다.
- ③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④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 후 돌려줄 수 있다.
- 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호자는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해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와 교육부는 소지·허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과몰입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주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④ 국가인권위와 교육부는 인권 친화적인 것만 강조하지 말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도 함께 고려해주길 바란다.

□ 교직 사회에 회자하는 두 가지 ‘웃픈 말’이 있다. ‘남은 자의 슬픔’,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다’라는 말이다. 정책 결정은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이 하지만 결국 그 일의 실천자는 바로 학교이자 교원이다. 사회적 요구나 이슈가 생길 때마다 교육과정 변경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담아 교육을 하라는 요구도 받는다.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둘러싼 모든 고민과 갈등, 해결책도 학교의 몫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쪼록 학교 현실을 반영하고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교사의 교권 등 모든 고려사항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 끝.

토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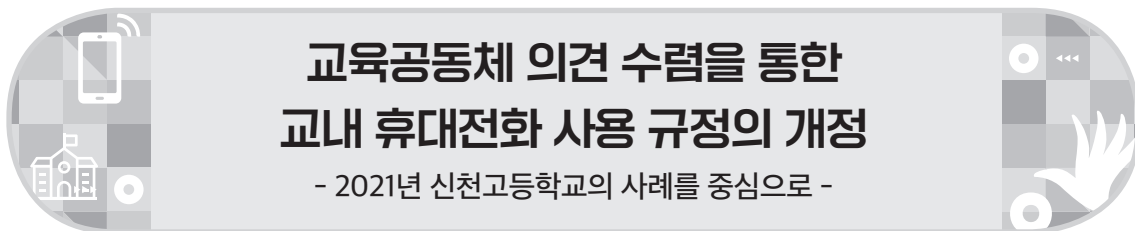
#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의 개정

이성균(신천고등학교 교사)









##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의 개정

- 2021년 신천고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성균(신천고등학교 교사)

### I. 2021년 당시 신천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규정

**제26조(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교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학생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 ② 수업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세부규정은 학년부에서 작성하여 실시한다.
- ④ 수업 중 휴대전화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⑤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생에 대한 안내사항은 [서식 1]과 같이 한다.
- ⑦ 정기고사 중 휴대폰(통신기기)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⑧ 학교폭력, 사이버 도박 및 사행성 오락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의견수렴을 거쳐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서식 1]

##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예절

우리 학교는 휴대폰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단, 수업 진행에 방해되는 휴대폰 사용은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의 제26조(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에 의거하여 1회 적발 시 3일, 2회 적발 시 5일 압수되며, 3회 적발 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생활교육 대상자로 회부되어 처리될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 수업 전 교사 안내 사항 (매시간 실시)

#### 1.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이 불필요할 때

- (1) 수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 (2)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합니다.
- (3) 자신의 가방에 휴대폰을 넣습니다.
- (4) 쉬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 교사 안내 후, 학생들은 자신의 가방에 휴대폰 넣기

#### 2.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휴대폰 사용이 교육적으로 필요할 때

- (1) 지금부터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음악과 게임은 불허합니다.
- (2) 휴대폰 사용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신의 가방에 넣어 주세요.

☞ 교사 안내 후, 학생들은 자신의 가방에 휴대폰 넣기 실천

#### 3. 휴대폰을 직접 사용하여 수업을 해야 할 때

- (1) 휴대폰을 사용하여, 000을 실행하세요. 단, 소리는 무음으로 해주세요.
- (2) 선생님이 허락한 용도 외 휴대폰 사용은 금지합니다.

○ 수업 담당 교사는 수업 전 또는 수업 중 교실의 ‘휴대폰 수거 바구니’에 휴대폰을 임의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사용 방침을 잘 지켜 건전한 휴대폰 사용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 신 천 고 등 학 교

## II.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

일부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행성 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교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행성 도박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전교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전교생이 받게 되는 피해보다 크다고 예단할 수 없으므로, 학교 일과시간 중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도박 억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행성 오락 및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의 통신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 유지, 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아동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담당기관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 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인권규정 제26조 8항을 신중하게 적용하기를 권고한다.

## III.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

### 1. 권고 사항과 관련된 사항

신천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26조 8항: 학교폭력, 사이버 도박 및 사행성 오락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의견수렴을 거쳐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2. 권고 사항

신천고등학교 교장에게,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인권규정 제26조 제8항을 신중하게 적용하기를 권고합니다.

## 3. 이행 과정(계획)

일시	이행 과정	내용
2021.02.16.	진정 공문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20-진정-0752800)
2021.03.02.	인수인계	신임 교장선생님 진정사건 인수인계
2021.03.10.	이행 계획 수립	학생안전자치부 주관 진정 사건 처리 계획 수립
2021.03.22.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총 8명(교사 3명, 학생 3명, 학부모 2명)
2021.04.05.	규정개정심의위원회 1차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26조 8항 적용을 철회하기로 결정함.</li> <li>• 휴대폰 관리를 학생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결정함. 단,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 제한 지침도 함께 마련하기로 함.</li> <li>•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가 각각 교육주체별(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재협의하기로 함.</li> </ul>
2021.04.09.	규정개정심의위원회 2차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학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휴대폰을 관리합니다.’라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업 시간 중 학생 휴대폰 관리 방안’ 시안(試案)을 마련함.</li> <li>• ‘수업 시간 중 학생 휴대폰 관리 방안’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을 수립함.</li> </ul>
2021.04.20. ~ 2021.04.23.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수업 시간 중 학생 휴대폰 관리 방안’ 시안에 대해 찬성 78.4%, 반대 12.1%, 부분 수정 9.5%의 설문 결과가 나옴.
2021.04.30.	규정개정심의위원회 3차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 휴대폰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함.</li> <li>•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급 게시판 홍보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휴대폰 관리 방안을 교육하기로 함.</li> </ul>
2021.05.17.	규정 시행	• ‘수업 시간 중 학생 휴대폰 관리 방안’을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임.

## IV. 교육공동체 제안

### 학생 의견

- 수업 시작 전 교사 또는 학급자치회장이 휴대폰 무음 확인 지도
-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 적발 시 압수한다.
  - 1회 1일 압수 · 2회 2일 압수 · 3회 학부모 연락 및 4일 압수
  - 4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예: 4교시 수업 시간 중 적발 시 휴대폰 압수 후, 하교 시 돌려주고 다음 날 4교시까지 압수
- 학생의 부주의로 휴대폰 진동 및 소리(알람 포함)가 울린 경우 압수를 원칙으로 하되, 교사의 재량에 따라 선처가 가능함.

### 교사 의견

1학년부	- [서식 1]의 '우리 학교는 휴대폰 사용이 자유롭습니다.'을 '우리 학교는 교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로 수정
2학년부	- 기존 규정에 아래와 같은 단서 조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폰은 가방 속에 반드시!!! 수업 중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등 교사의 눈에 휴대폰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압수 대상.</li> <li>· 적발한 담당 교사가 압수 지도. 담임교사에게 지도 인계 불필요. 단, 학년부에 휴대폰 적발 일지에 반드시 기록(모든 교사들의 지도 및 적발 기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선도 처벌이 명확히 수반될 수 있음)</li> </ul>
3학년부	-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예절을 철저히 지켰으면 함. - 기존 규정 안내 사항에서 2-(2)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폰 사용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에서 '제한'이란 용어 삭제</li> </ul>

## 학부모 의견

- 추가: 학년별 3회 적발된 학생이 5% 이상인 경우, 그 학년은 휴대폰을 전면 수거함.

### 1.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이 불필요할 때

- (1) 수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 (2)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합니다. 아침방송 실시
  - (3) 자신의 가방에 휴대폰을 넣습니다.
  - (4) ~~쉬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점심시간에만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 교사 안내 후, 학생들은 자신의 가방에 휴대폰 넣기 5교시 직전 안내방송

## V. 개정된 신천고등학교 휴대전화 사용 규정

우리 학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휴대폰을 관리합니다. 단, 수업 시간\* 중 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의 제26조(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학년부에서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 등과 관련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휴대폰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학년별 위반 누계 20회마다 휴대폰 수거 기간을 1주일씩 늘림.

단, 누계는 학기 단위로 계산한다.

- 학년별 누계 20회 위반: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휴대폰을 1주일 동안 수거함.
- 학년별 누계 40회 위반: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휴대폰을 2주일 동안 수거함.
- 학년별 누계 60회 위반: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휴대폰을 3주일 동안 수거함.

⋮  
⋮

\* 수업 타종을 기준으로 본령과 종료령 사이의 시간을 의미함.

\*\*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목격하거나, 진동 또는 기계음 등이 울린 경우 등 비의도적인 상황에서 휴대폰의 존재를 인지한 모든 경우를 포함함.

### <위반 시 조치 사항>

- ① 교과 담당교사: 위반된 학생 또는 학급자치회장과 동행하여 담임교사에게 보고하고, 압수하여 당일 학교 시 돌려줌.
- ② 담임교사: '행동특성및종합의견' 누가 기록에 사안을 입력한 후, 학년부 생활지도담당교사에게 보고함.
- ③ 학년부 생활지도담당교사: 학년별 위반 누계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휴대폰 수거에 해당하는 누계에 도달하면 학년부장에게 보고함.
- ④ 학년 부장교사: 학년별 누계를 점검하고, 휴대폰 수거를 결정하여 시행함.

※ 만약 휴대폰의 존재를 인지했으나 특정 학생을 적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위반된 학생이 동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과 담당교사가 학급자치회장과 동행하여 담임교사에게 보고함. 담임교사는 교무수첩에 기록하거나 '행동특성및종합의견' 누가 기록에 사안을 입력한 후에 학년부 생활지도담당교사에게 보고함.

신천고등학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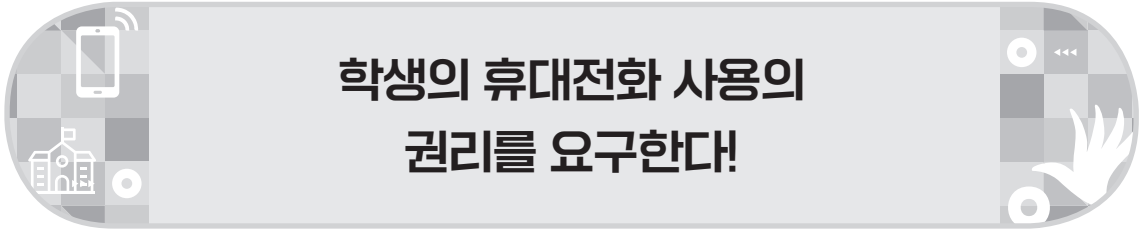
토론 3

#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의 권리를 요구한다!

민서연(고등학생)







##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의 권리를 요구한다!

민서연(고등학생)

내가 다닌 학교는 모두 휴대전화 규제가 있던 학교였다.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전화 수거가 당연한 건 줄 알았다. 그래서 일상처럼 반에 들어가면 휴대전화를 내고 자리로 들어갔다. 대부분의 일과를 보내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할 것이 생긴다면 교무실에 가서 학교 전화를 빌려 전화하곤 했다. 휴대전화를 왜 제출해야하는 지도 모른 채 학교생활을 했고, 사실은 지금도 잘 모르겠다. 교무실에서 빌려주는 사무용 전화는 번호가 휴대전화의 번호와는 다르기에 엄마가 잘 받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도 그 사무용 전화를 사용했어야 해서 생소한 번호에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쉬는 시간마다 전화를 하러 갔었는데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 엄마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쉬는 시간마다 전화를 해야했다.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내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될 일을 굳이 더 힘들게 해야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휴대전화의 수행하는 기능, 어떤 기능을 하는 지 다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듯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곳에서는 모두 휴대전화를 소지하여도 되지만 학교는 예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을 제지 대상을 바라본다든지, 오직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만 들어야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의미이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을 때 교사에게 이를 들키게 된다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청소를 하고 반성문을 써야한다고 친구에게 들었다. 그리고 친구가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서 혼나는 것을 보았다. 휴대전화를 훔친 것도, 휴대전화를 깨트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었다. 그 휴대전화는 훔쳤던 그 친구의 것이었고 그저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교무실에서 그 친구를 혼냈던 교사가 우리 반 종례시간에 찾아와, 휴대전화를 수거한다면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들으면서 무슨 말인 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왜요?’ 라고 묻는 것을 싸가지없다고 여기는 학교에서 뭘 물어보나 싶어 ‘아 여기는 학교니까 내가 참아야지’ 라고 생각했었다. 사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휴대전화로 노래를 크게 틀고 칠판을 갑자기 지우고, 교사를 반 밖으로 내쫓은 것도 아니고, 휴대전화 가지고 있었던 걸로 교권을 침해하고

학습권을 침해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 논리이다. 또한 수업을 소리내어서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와 수업에 집중하여 참여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우리학교는 휴대전화는 수거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외에 다른 전자기기는 소지하여도 된다. 태블릿이나 노트북 말이다. 태블릿이나 노트북은 학교 과제를 하거나 수업시간에 필기를 하라는 것이다. 숙제가 대부분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거나 자료를 조사하거나 논문을 확인해야하는 과제들이 많은데 휴대전화로 알아보면 될 일을 굳이 태블릿을 구입하고 노트북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 모순적이지만 다른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교칙으로 인하여 휴대전화 제출을 하기에 노트북과 태블릿을 구입한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구입하지 못하는 이들은 다른 학생의 전자기기를 빌려 과제를 하기도 한다. 휴대전화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나도 없었는데 학교에 다니려면 전자기기가 하나쯤은 있어야해서 돈을 모아 구입하게 되었다. 이는 학교에서 더욱 경제적 격차에 따라서 수업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과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전자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교칙의 적용하는 것은 교사마다 다르다. 태블릿과 노트북도 본인 수업에서 사용하지 말라며 막는 교사들도 있다. 며칠 전 있었던 일인데 나름대로 관심있는 내용이라 교사의 수업을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고 태블릿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자기기를 빨리 끄라고 교사가 화를 내었다. 그래서 필기하고 있었다고 나름대로 해명했는데 교사는 ‘어쩌라고’라고 말했다. 당황스러웠지만 본인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딱 짓하는 것을 보인다고 경고를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교사와 비슷하게 몇몇 교사들은 본인의 수업시간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첫 수업 시간부터 경고를 주고 시작하는 교사들도 많다. 학생이 교사에게 교사가 오해하고 있음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않고 학생을 수업시간에 지적을 한다. 교사에게 지적을 받는 학생들은 수치심이 들고 자괴감이 든다.

교 내에서 인권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몇 달 전, 동아리원들에게 학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교칙을 찾아 작성해보라고 했었다. 그러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전화 규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학생들은 ‘집에서도 수거를 안하는데 학교에서 수거하는 건 이상한 것 같다’, ‘인터넷을 사용해야하는 과제들이 많은데 그럴거면 휴대전화를 왜 수거하는 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모두가 학교에서 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는 지 모르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아무튼 왜 수거하는 지도 모르겠는 휴대전화 규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지 논의를 해보았다. 학생들은 다양하게 이 교칙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구상했다. 학생들은 휴대폰 규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학급 내에서 규칙을 정하거나 학교에 요구할 점은 강제적인 규정을 없애고 휴대전화와 관련한 에티켓을 정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강제적 규칙을 두더라도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다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될 수 있고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교사들이 만들었고 이는 학생들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이 규정은 휴대전화 소지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휴대전화 소지가 퇴학처분 될 정도의 잘못된 문제인가? 학교는 휴대전화 규제를 정확히 왜 하는 것인지 설명한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는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긴급한 상황에 전화를 못하게 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또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의 교칙을 한 번 더 인권적으로 개정하고 학생들을 규제하는 규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휴대하는 당연한 말이 학교에서도 당연하게 여겨졌으면 한다.



## 토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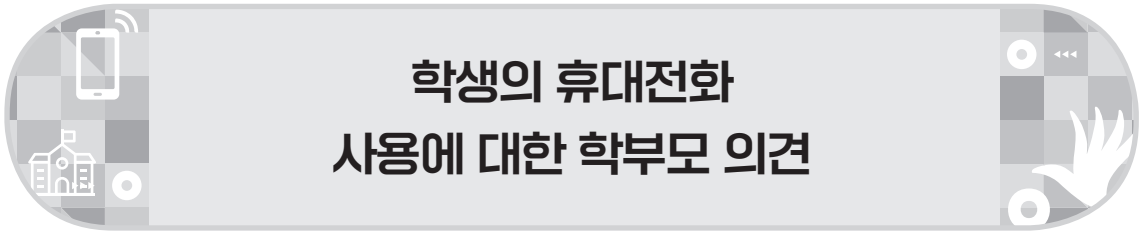
#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부모 의견

이윤경(학부모)









#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학부모 의견

이윤경(학부모)

## 여는 말

학부모들과 자녀의 휴대전화와 관련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는 안 하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는 자녀 때문에 집 와이파이를 해지했다,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심지어 화가 나서 부숴버렸다는 얘기를 너도 나도 무용담처럼 풀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내내 수시로 올라오는 SNS를 확인하느라 상대방의 얘기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러면서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라고 웃으면 “그러게요”라고 머쓱해 하며 얘기가 끝이 납니다.

휴대전화를 최대한 늦게 쥐어주라는 교육 전문가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확산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불가피해지고 친구를 직접 만날 수 없게 되면서 휴대전화 없이는 그 연령대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우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담임교사가 연락해 “출결 체크나 공지사항 전달이 너무 어려우니 휴대전화를 장만해 주시면 좋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6년 터울의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휴대전화와 관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논의 테이블에 불려간 적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교도 학생들과 논의를 하면 될텐데 왜 학부모의 의견을 묻는지 이해가 잘 안됐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긴 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휴대전화 관련 학부모 참여 에피소드들입니다.

## 1. 3주체 협약

2016년 서울의 혁신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주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강당에 모여 3주체 토론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급회의를 이미 거친 후에 각 반의 대표들이 학급회의 결과를 발표했고 교사와 학부모는 현장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교사의 의견 중 “쉬는 시간만이라도 휴대전화 대신 친구들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 그날 가장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찬반 학급 수를 집계해서 ‘등교 시 휴대전화 수거’로 결론이 났는데 토론이 끝난 후 학생들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 교사랑 학부모는 개인들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학급회의 결과만 발표하느냐, 학급회의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 무시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2. 학교운영위원회

2019년 공립 중학교에서 2학기 학운위 사안으로 휴대전화 사용 건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등교 시 일괄 수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학부모위원들의 의견은 수거하자는 쪽이 다소 우세했습니다. 저는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존중하자고 했습니다. 예상 외로 학생 설문조사 결과도 일괄 수거가 높았습니다. 당시 2학년이었던 자녀가 그러더군요. “3학년 선배들이 후배들 당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더라. 졸업하는 학생들은 빼고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 3. 불통과 감시

현재 자녀가 다니는 사립 고등학교는 제가 경험한 휴대전화 수거 방법 중 가장 철저한 곳입니다. 교사들도 번거롭다고 할 정도로 휴대전화 수거가 업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학생들이 공기계를 제출할까봐 기종을 일일이 기록하게 하고 랜덤으로 전화도 해 본다고 합니다. 등교하자마자 마치 불법 무기 반납하듯 철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교실 분위기가 어떨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휴대전화 수거 방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는커녕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의견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 전에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에 규칙을 정합니다. 식사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지 않기, 하루에 일정 시간만 보기, 몇 시 이후엔 전화기 끄기 등 자녀의 연령과 자기 조절 능력에 따라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도 입실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선호하는 학부모와 학생은 그 곳을 선택하고 아닌 경우엔 다른 곳을 가면 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안심 어플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것 역시 학부모와 자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선택’이지 몰래 설치했다가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학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방적으로 학교가 정한 규칙을 따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매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고 함께 결정한대로 약속을 지키자고 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중에 휴대전화를 꺼두기로 약속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 반은 어떤 규칙을 정할까 함께 얘기하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습관처럼 몸에 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금지할 경우 그 곳만 벗어나면(그 학교만 졸업하면), 그 규칙만 지키면(공기계라도 일단 제출),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것만 반복할 뿐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배울 수 없습니다.

3주체 의견 수렴이라는 명분으로 학교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학부모를 동원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안이 ‘휴대전화 수거’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수긍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사가 아니어도 자녀를 양육한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성인 대상 강의를 들을 때 입장 시 휴대전화를 수거한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강의 내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사람으로 키울 것인지 때와 장소를 가려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것인지는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휴대전화와 함께 생활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면서, 정작 교육은 우리 세대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야 합니다.



## 토론 5 토론문

최주현(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 토론 6

## 토론문

이필우(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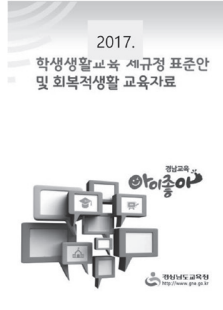


# 토론문

이필우(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센터장)



이필우(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



**제6조(학생의 권리)**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⑤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을 통해 휴식할 권리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제7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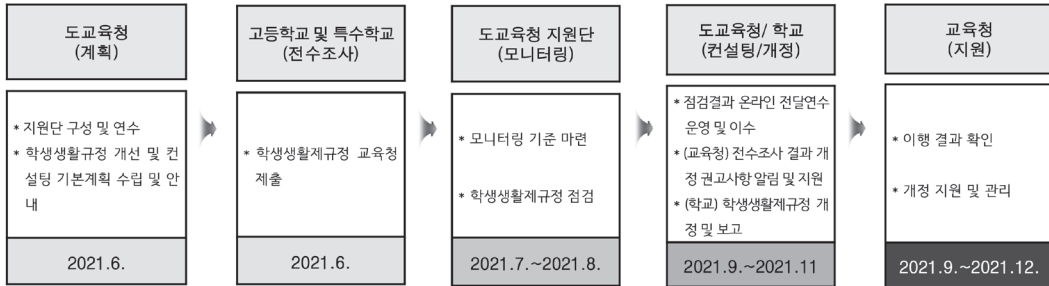
- 11. 공공의 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지킬 의무

## I.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개정 방향

### ●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학생 인권 영역 및 내용

영역	주요 내용
차별금지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민족, 언어, 장애, 몸무게 등 신체의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생활,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역,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 - 제발 및 신체적 고통을 - 이동제한, 성폭력 등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권 보장, 이권차별
사생활의 자유	- 두발, 몸모 및 복장의 자유 - 고정형 명찰 부착 강요 금지(탈부착 가능) - 여학생의 교복 치마와 바지 중 선택권 보장 - CCTV 설치 여부 및 CCTV 설치 여부 및 장소 결정 시 학생 의견수렴 - 개인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일기장 또는 개인 수첩 검사 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금지, 성적·징계 사실, 교육비·급식비 등 개인신상 정보보호, 학교 밖 명찰 착용 강제 금지 등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교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 서명이나 실명을 통한 - 교내·외 간담회 활동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만성문, 사면서 작성 -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 내외 과목 없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자치 및 참여권리	- 동아리 활동, 학급회, 학생회 활동 적극 보장 - 학치제·개성 과정에서의 학생 의견 존중 -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 보장 - 학생 대표회의 장외적 연립 실시 -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적법한 징계절차	-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소명의 기회(진술권 보장), 대외인 신원 권 요청 요청 등 - 징계 내용 공고 금지 - 무기한 상·벌징계 제도 개선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학생인권 침해 시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상담·구제 신청 제한 금지 및 이를 이유로 한 징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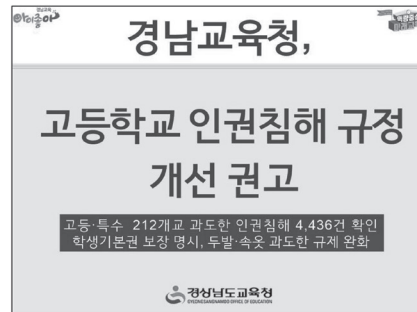
< 2021.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수조사 진행 및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흐름 >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제규정 전수조사 및 개선 컨설팅



학생생활제-개정 지원단 연수 (2021. 6. 16.)



고등학교 인권침해 규정 개선 권고(2021. 10. 24.)

- 도내 고등학교 202교, 특수학교 10교 대상 학생생활제규정제규정 점검
  - 학생생활규정 1,406건, 학생선도규정 1,428건, 학생자치규정 974건, 기숙사 생활규정(표준안 제정) 465건, 제·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 163건

### 통계 분석

- 고등학교 199교 학교생활규정, 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에 대한 전수조사
- 학교규칙 규정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범주로 분류
- 생활규정 : 학생생활 규정, 두발 및 복장 관련 규정, 휴대폰 사용 규정 등
- 선도규정 : 훈육훈계 규정, 징계 규정 등
- 학생자치규정 : 학생회운영 규정, 임원선거 규정 등
- 특수학교 : 생활규정, 선도규정, 자치규정 등

### 모니터링 주요 항목 및 결과

-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의 원칙

## 2021.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 통계 분석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 N=212>

규정	생활규정	선도규정	자치규정	기숙사규정	제·개정 절차	총 계
건 수	1,354 (31.4%)	1,385 (32.1%)	958 (22.2%)	455 (10.6%)	157 (3.6%)	4,309

<특수학교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 N=10>

규정	생활규정	선도규정	자치규정	기숙사규정	제·개정 절차	총 계
건 수	52 (40.9%)	43 (33.9%)	16 (12.6%)	10 (7.8%)	6 (4.7%)	127

### 학생생활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통영 스탠포드 호텔(2021. 10. 25~27. 권역별 3회기)

- 인권침해 소지 규정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특수학교 직무연수
- 도내 전 고교, 특수학교 교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대상 (230명)

### 202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선 및 컨설팅 계획

#### 추진 개요

교육청 (계획)	학교 (전수조사)	교육청지원단 (모니터링)	교육청/학교 (컨설팅/개정)	교육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li> <li>▪모니터링단 구성 및 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생활규정 교육청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생활규정 점검</li> <li>▪개선 요소 작성</li> <li>▪자문위원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개정 연수</li> <li>▪교육청권고사항 : 지원/ 개정,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행 결과 확인</li> <li>▪미이행교 지원</li> </ul>
2022. 6.	2022. 6.	2022. 7. ~ 8.	2022. 9. ~ 12.	2022. 12. ~

## 2022. 학생생활규정 개정 주요 권고 내용

영역	순	항목별 주요 내용	개선사항
생활 규정	1	학생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및 학교규범 준수 의무와 권리	반영
	2	편견과 차별적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수정	반영
	3	염색, 파마 등 두발의 색상, 모양, 길이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삭제
	4	화장 등 용모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삭제
	5	양말, 신발 등의 색상 및 형태 제한, 교복 위 방한용 덧옷 착용 금지 (색상, 모양 규제 포함)	삭제
	6	여학생 교복의 치마와 (반)바지 선택권을 보장	반영
	7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	삭제
	8	구성원의 합의에 따른 학생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관리방법	반영
	9	소지품 검사에 대한 안전성, 긴급성, 동의여부에 근거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반영
	10	선도부원의 역할 (※ 학생에 대한 교육은 교사의 직무임)	수정

※ 불이익은 '징계' 의미

### [서식] 2022. 학생생활제규정 체크리스트

기관명		학교	작성기준일	2022. 12. 2.		
점검자 (직위)		(성명)		(인)		
순	점검 항목	점검결과				
1	학생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및 학교규범 준수 의무와 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편견과 차별적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수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염색, 파마 등 두발의 색상, 모양, 길이 제한을 어길 경우 불이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화장 등 용모 제한을 어길 경우 불이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양말, 신발 등의 색상 및 형태 제한, 교복 위 방한용 덧옷 착용 금지 (색상, 모양 규제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여학생 교복의 치마와 (반)바지 선택권을 보장 (※ 남학생교는 '해당없음' 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구성원의 합의에 따른 학생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관리방법 마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소지품 검사에 대한 안전성, 긴급성, 동의여부에 근거한 기준과 절차 마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선도부원의 역할 (※ 학생 지도 및 교사 보조 내용 삭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전수조사(모니터) 사례

근거 조항	항목별	개정 대상 학교규칙 사례
「헌법」 제10조, 제18조, 제23조, 제37조 「아동권리협약」 제16조, 제28조	휴대폰 사용 제한 및 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전화 소지 등교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li> <li>○ 담임교사에게 휴대폰을 보관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압수 보관한다.</li> <li>○ 일괄 보관 중 발생한 분실, 파손 등의 책임을 학교에 물을 수 없다</li> <li>○ 휴대폰 사용 규정을 1회 위반할 경우 1개월, 2회 위반할 경우 3개월, 3회 위반할 경우 6개월 압수 조치한다.</li> </ul>

#### 휴대기기 사용 규정 관련 개선 내용

-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학생 안전문제(학교 후 부모와의 연락 등)에 따라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임.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특히 위반 시 압수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구성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권 침해 우려
- ‘압수[押收]’ 는 타인의 물건을 따위를 강제로 빼앗아 가는 행위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
- 휴대폰 사용 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휴대폰 사용 강제로 제한시키기보다 성찰의 기회와 민주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는 지도방안을 강구하여 적용

### 학교생활 중 휴대전화 과도한 제한에 대한 민원 사례

#### 해당 학교 사실 확인(학교규칙 확인 및 실제 적용)

- 제25조 (통신기기) ① 개인의 전자통신기기(휴대폰 등)는 정규 수업시작 전에 휴대폰보관함에 제출했다가 하교시 또는 정규수업 이후에 찾아가도록 한다.
- ②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는 바르게 사용하고 관리되도록 노력한다.
- ③ 고사기간 중 휴대폰은 소지할 수 없으며, 담임교사가 보관했다가 고사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돌려주도록 한다.
- ④ 휴대폰으로 인하여 수업이 방해되거나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담임에게 3일 간 제출한다.

#### 민원 답변(휴대폰 해당 부분)

민원담당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교사의 수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생활 중 학교구성원이 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 되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대토론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한 규정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지, 내용적 측면에서 기본권 제한의 원칙으로는 제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의 전면적인 수거보다는 희망자에 한한 수거, 통신예절교육 병행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답3

학교 내 휴대폰 수거 및 사용은 금지해도 되나요?



현대에서부터 휴대전화의 기능

• 단지 통신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전달, 취득, 위기 상황 대처 등을 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짐

12월 2009-164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수단으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없음

• 휴대전화 사용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교사의 수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생활 중 학교구성원이 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됨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함

-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선 「아동관리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을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함 (과잉금지 원칙)
-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금지가 교육공동체의 다수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도, 이것은 형식적 측면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지 내용적 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정당성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칙에 반하여 부적합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민원 특특



-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447800) - 휴대폰 강제 수거에 따른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589600) - 휴대폰 강제 수거 등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694000) -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018700) - 일과 중 휴대폰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205500) - 학교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 제한 등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유선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 제3조 ① 공중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병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6조 ③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사의적이거나 위협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여 또한 명예나 신상에 대한 위협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② 형사연 담당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학업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38조(학부 규정) ① 학교의 장(학교장)은 실연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막는다. 헌법과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의4(학칙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민주시민교육과 (210-5172)





- **프라이버시의 존중** : 학교는 공동체 생활공간임과 동시에 개인 휴식시간 등도 있으므로 사생활 보호 필요
- **공동체생활과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조화 - 개인별 사용 선택권 보장 환경 조성**
  - 교육활동 시간 이외에는 개인의 휴대폰 사용 선택권 보장 필요(타인의 학습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용)
- **참여와 의견수렴** : 휴대폰 사용과 제한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은 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 차원에서 이해 당사자 간 참여와 충분한 논의로 합리적 대안 모색



---

## 인권 친화적인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

인 쇄 2022년 8월 31일  
발 행 2022년 8월 31일  
발 행 인 송두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주 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 화 (02)2125-9646 FAX (02)2125-0929  
인 쇄 처 디자인모장  
전 화 (02)2278-1990 FAX (02)2278-1992

---

I S B N 978-89-6114-898-6 9337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